

#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의 철학적 검토

: 성과 정치권력의 이중성과 인권문제

박홍영 \_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목 차

- I. 서론
- II. 성의 문제: 역사성과 폭력성
- III. 성과 정치권력: 제국주의 및 국가의 문제
- IV. 결론

### 국문초록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전쟁의 산물이다. 책임은 전쟁의 주체가 져야한다.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다. 성은 인권문제이다. 시대가 치는 다를지언정 문명사회일수록 인권가치는 성스럽다. 인권은 자연법적 보편가치이다. 전쟁으로 성이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유린된 성과 인권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조약이나 보상으로 끝날 수 없다. 보편가치는 전승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인간욕망은 절제되어야 함에도, 전쟁은 통제 불능과 절제 무용(無用)을 조장하면서, 더 범죄를 악화시키며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다. 제국주의시대의 책임(보상과 사죄)은 일본제국의 법통을 이은 일본정부가, 국권상실(대한제국)과 국권회복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려면 한국정부의 도의적 가치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도 책임을 다하고 일본에게 당당해야 한다.

이 글의 탈출구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문화적 저항’이다.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문제에 대한 저항이다. 남은 과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생명력을 이어갈

의식 있는 국민 다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어떠한 논쟁과 저항도 허용되는 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예방되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2016년 한국의 촛불정신은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게 인간이냐?”라고.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전진의 역사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종결형이거나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고 물음표여야 한다.

## 주제어

일본군 중군위안부, 성, 정치권력, 전쟁, 국민국가

.....

# I . 서론

이 연구는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성(Sexuality)과 정치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적으로 검토한다.<sup>1)</sup>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특정

---

1) 위안부 호칭에 대해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신대로 불렀다. 정신대라는 말은 전 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혼용되는 용어가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 한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쓰이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일본군 중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유는, 위 내용과 달리 일본정부의 국회답변을 보면, 일본은 일본군 중군위안부라는 용어사용을 꺼려한다. 일본은 ‘이른바 위안부(いわゆる慰安婦, 매춘부)’였지 국가가 동원한(중군)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중군 기사나 중군 간호사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第166回 衆議院 外務委員會 會議録 10号(平成19年5月9日), 麻生太郎(自由民主党, 外務大臣). 중군을 강조하는 것이 일본 제국주

문명역의 것이 아닌 인류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 성 의학, 국제법, 국내법 등 다양한 관점의 검토를 요구한다. 이 연구에서 철학적 검토라는 의미는 성과 정치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철학적 고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적 고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적·국제관계적·법적·성적·원초적·역사적 이슈인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이성적·초역사적·복합적·보편적 가치의 그 무엇으로 고민해서 의미규정을 시도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를 '문제'로 표기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자료나 사실을 전제해서 논리를 세우고<sup>2)</sup>, 철학적 고민의 재료로 삼아, 연구자가 작위로 "경험적 사례나 관념의 생성"<sup>3)</sup>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석과 평가를 시도한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반면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는 오래된 주제이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역사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인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국가적 문제, 국제적 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정치권력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정치권력은 기본적으로 A: 강제·강압·폭력과 B: 회유·보상·보복의 양상을 띤다. 이에 대해 권력자가 아닌 일

---

의의 본질에 더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 2) 이를 위해 철학사전, 경제학사전, 정치학사전, 위키백과, 네이버백과, 다음백과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이런 자료가 연구 자료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정치학연구에서 신문 보도자료는 정부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인터넷 백과의 경우도 사실인지(fact) 아닌지(fake)가 문제이지 오히려 사실전달의 미디어로 충분한 가치가 입증될 뿐 아니라, 다국어로 구성된 위키백과의 경우 허접한 논문구성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진화했고, 새로운 연구형식 및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3) 이에 대한 논의는, 도중윤,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59쪽. 사회과학의 글쓰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치학 논문이 실사구시, 철학적 문제, 실천적 함의 등을 요구한다면, 요즘 같은 미디어 다양화 시대에 새로운 형식의 논문쓰기가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도 그런 시도의 하나이다.

반인은 C: 수용·순응·협력, D: 반대·저항·무관심의 양상을 띤다. C·D 영역이 폭넓게 허용되고, 그런 일반의지(루소)가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력은 국민국가시대<sup>4)</sup> 이래로 국가권력이 포괄적으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경제권력(자본가), 계급권력(노동자), 문화권력(지식인·민중·종교·인종), 사회권력(군·경·검) 등이 국가권력을 더 장악하기 위해 투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내권력과 그 국내권력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대외권력을 총칭한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대별하면 역사적 관점(인식과 사실관계), 국제법적 관점(조약과 실정법), 인도적 관점(인권과 윤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개가 역사적 관점, 국제법적 관점, 인도적 관점에서 단죄되거나 사죄 및 보상의 대상이었다. 또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제국주의가 범한 죄라는 일반화, 법적 형식적 완료형으로서의 조약의 유효성 문제, 시대흐름이라는 변명의 문제, 성노예와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의식 및 책임의식 등을 둘러싼 논쟁과 해석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는 국제법과 제국주의,<sup>5)</sup> 배상과 조약,<sup>6)</sup>

4) 국민국가(nation-state)는 민족국가라고도 한다. 국가의 주권이 동일민족 또는 국민에게 있는 주권국가이다. 과거에는 이단(異端)시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당연시 되어 국제관계의 주체로서의 주권국가는 국민국가일 것이 요구된다. 국민국가의 이념은 시민혁명과 함께 확립되어 국민주의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의 침투와 함께 유럽 각국에 확산되어 결국에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민족주의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의 운동이나 비(非)식민지화(민족자결)에 의해 독립을 달성한 신흥독립 국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체제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5)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 2015; 정영환 지음, 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 푸른역사, 2016; 中川敏宏, 「慰安婦合意と憲法訴訟—最終的解決が残したリーガル・イシュー—」, 『国際問題』, No.655,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6.

6) 中川(2016).

역사인식과 청산의 문제,<sup>7)</sup> 인권과 성매매,<sup>8)</sup> 성노예와 성폭력,<sup>9)</sup> 피해와 가해의 윤리,<sup>10)</sup> 책임과 사죄문제<sup>11)</sup>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들 선행연구는 각 주제를 망라하면서 중첩되기도 한다.<sup>12)</sup>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적 관점(인권·윤리·철학)에 가깝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관련 한일정부 간 합의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기보다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 및 책임회피, 수용 및 보상, 부분인정 및 상호목인 정도의 외과적 치료이다.<sup>13)</sup> 이러한 성격의

- 
- 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2001b; 와다 하루키 지음, 정재정 옮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2016.
- 8)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지음, 이성순·한예린 옮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나남출판사, 2010; 우에노 지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현실문화, 2014.
- 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001a; 정진성, 『일본군 성 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송연옥 외 지음,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 10) 박유하(2015).
- 11) 이석태 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 12) 이에 대한 논의는, 朴洪英, 「日本軍従軍慰安婦に関する日本国会会議録(1990-2016)の検討: 日本政府の本音と建前の読み取り」, 『일본연구』 70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49-50쪽.
-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0017&ref=D> (검색일: 2017.6.29). UN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나온 UN 기구의 첫 공식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 보고서 핵심은 2015년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6년 만에 발간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담긴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약속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기존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38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피해자 구제권 측면에서 합의의 내용과 범위가 모두 미달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위안부합의에 대한 UN 차원의 첫 공식 평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합의는 역사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거나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성과 정치권력 및 성매매와 성폭력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 정치권력의 폭력성 고발과 방지대책, 공존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욕망의 절제와 전쟁의 범죄, 인간존중과 도덕성 함양 등 시민의식의 질적 성숙문제와 더불어 성찰되어야 한다. 이 일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절차적 과정 및 사죄하고 용서하는 국민적 정서와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철학적 검토를 시도한다.

## Ⅱ . 성의 문제: 역사성과 폭력성

### 1. 성매매와 성폭력의 역사성

일반적으로 성매매와 성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기서는 간략하게 기존의 정리된 견해를 확인한다. 이는 철학적 검토를 위한 소재로 활용한다.

성노예(性奴隸, sexual slavery)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부리는 인간 노예를 일컫는 말이다. 성노예는 주인인 개인에게 속한 노예, 특정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노예,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곳에 속한 노예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빈 선언과 행동계획은 성노예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14)</sup> 성노예에 대한 정의는, 로마 규정<sup>15)</sup>(7조 2항 C절)

14)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회의는 “빈 선언 및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그 가운데, 제17조A항은, “전시상황에서 저질러진 특히 집단학살형태의 대규모 인권침해와 인종청소,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실망을 표시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들은 처벌되어야하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지되어야한다.”고 명기했다.

에 따르면, 성적 예속은 한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의 일부 내지는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예속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성적 학대 내지는 강간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내지는 가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인물 모두에 성적 향응을 제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위로서 범죄로 규정된다.<sup>15)</sup>

성매매와 성폭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하다. '백인 노예(White slavery)'라는 용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성노예 상태의 백인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특히 오리엔탈리즘적 시점에서 일명 체르케스 미인<sup>17)</sup>들과 같이 중동의 하렘<sup>18)</sup>에서 노예상태로 전락한 백인 여성들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인 노예는 점차 매춘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로 바뀌어갔다. 특히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던 어린이나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매춘을 가리킬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영국 전역에서 전국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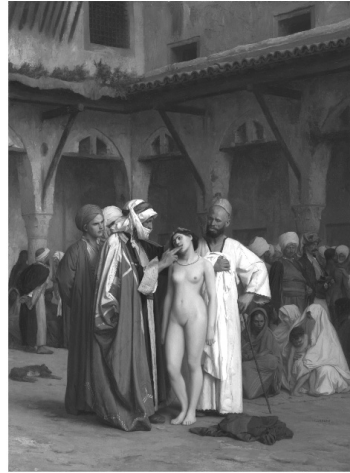
15)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된 규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해 120개 나라가 찬성하였고, 미국·이스라엘·중국·인도 등 7개국은 반대외사를 표명하였다. 로마 규정(Rome Statute)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집단 살해죄, 비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기소의 주체는 로마 규정 당사국·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가 된다. 이때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고인의 국적이 로마 규정을 비준한 국가일 경우에는 관계된 국가의 동의 없이도 재판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국내법원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해당 범죄를 처리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보충적으로 관할하게 된다. 한국은 2000년 3월 8일 로마 규정에 서명한 데 이어 2002년 3월 국회의 비준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국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8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323&cid=40942&categoryId=31719> (검색일: 2017.7.12).

16)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85%B8%EC%98%88> (검색일: 2016. 1.22).

17) 체르케스 미인들(Circassian beauties)이란 용어는 코카서스 북부지역의 체르케스 여성들을 이상화한 이미지로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18) 이슬람세계에서 가까운 친척 이외의 일반 남자들 출입을 금지한 장소. 보통 궁궐 내의 후궁이나 가정의 내실을 가리킨다. 하렘(harem)은 금단(禁斷)의 장소를 의미하는 아랍어 하림(harīm)이 터키어풍으로 변한 말이다.

항의가 잇따르면서 결국 영국의회에서 노예제<sup>19)</sup> 반대법을 제정하여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림 1>은 《노예시장, 1884년 작》이라는 작품이며, 장레옹 제롬(Jean-Léon Gérôme, 1824-1904)이 오리엔탈리즘적 시점으로 아랍의 성노예 시장을 묘사한 그림이다.<sup>20)</sup>



<그림 1>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하다. 인신매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이주여성의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특히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의 폐지에 힘입어 여러 사회(여성)단체들은 매춘 또는 성매매 문제를 성, 계급, 국가와 인종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컨대 영국에서 매춘에 대한 국가규제의 철폐가 성공적으로 이

19) 원시공산제 사회가 붕괴되면서 생겨난 사회제이다. 노예제에서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며, 생산수단이고 지배자의 소유물이어서 사역(使役)되고 매매되는 신분이다. 노예는 사회의 주요한 직접 생산자이며 노예제 사회는 노예의 생산력에 기초한다. 노예 소유자가 지배계급이며 그들은 상업, 고리대업 등도 병행하였고, 노예의 노동착취를 통해 경제적 부를 증대시켰다. 노예 소유자와 노예의 중간에는 부차적인 계급인 소(小)소유자, 즉 자영농민이나 수공업자 등이 있었다. 이러한 토대를 기초로 하여, 과학·예술·철학에 종사하는 사람도 나타나면서 노예제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노예는 그 소유자에게 저항하여(생산량을 줄인 다든가 도구를 파괴함으로써), 계급투쟁을 전개했고 생산력의 증가와 그에 따른 계급투쟁이 강화되자 몰락한 소(小)소유자와 연대해 투쟁하면서 노예제는 봉건제로 이행한다. 한국의 경우, 삼한시대부터 노예제도가 있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해체된다. 현대에도 제도적인 노예제는 소멸하였지만, 봉건제적 요소와 더불어 자본주의체제에도 사회주의체제에도 그 잔존물은 여전히 남아 있다(『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약간의 자구를 연구자가 수정함).

20)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85%B8%EC%98%88> (검색일: 2016. 1.22).



루어지면서 매춘부 문제는 국경을 넘은 이동, 이른바 ‘백인 노예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운동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체결된 백인 노예매매에 관한 1904년 협정과 1910년 협약은 국제연맹의 시기에 ‘부녀와 아동의 매매’에 대한 또 다른 조약체결로 이어졌다. 이후 1949년 유엔 협약은 모든 인간의 인신매매와 함께 매춘의 착취와 강제매춘을 금지하였다. 이 협약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진압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공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그 후 인신매매 문제를 인권에 기초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탈냉전시기와 세계화 속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어 2000년에는 인신매매 의정서<sup>21)</sup>가 채택된다. 이 의정서는 이전의 국제조약들을 통합하고 인신매매의 방지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표상한다. 그래도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관계문제, 인신매매와 노예제도, 강제노동 등의 개념들 사이의 경계문제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다.<sup>22)</sup>

즉 1900년대를 경계로 국제적·역사적 측면에서 성매매와 성폭력이 묵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략 1949년을 전후로 성매매와 성폭력은 국제적·역사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 실태는 다르며,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는 인권문제로 확대되면서 국제적(공간)·역사적(시간) 재정립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매춘이나 성매매가 아직 국내입법에 맡겨짐으로서 국가별로 보편적 인권문제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보편적 인권문제가 확립된 국가로서 시대변명(제국주

21) 한국정부는 2014년 7월 10일, UN 인신매매의정서(팔레르모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0년 12월 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비준 요청에도 비준을 미루어왔던 정부가 14년 만에 인신매매의정서를 비준한다는 사실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공익법 센터 어필, <http://apil.or.kr/?p=7691>).

22) 이에 대한 논의는,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 사회』 46호(법과 사회이론학회, 2014. 6), 233-266쪽.

의, 식민주의)이나 책임회피(중개업자 및 독려 등의 간접방식)를 이유로 보편가치를 외면하려는 것은 오히려 자가당착이다(나치즘이나 난민에 대한 독일의 정책을 보라).

## 2. 나치즘과 성폭력의 사례

나치즘과 성폭력의 사례는 기록물뿐만 아니라 영화나 소설 등의 장르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고발되었다. 여기서는 홀로코스트 추모일<sup>23)</sup>을 기해 고백한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 나치즘 성폭력 사례를 확인하고 철학적 검토의 소재로 삼고자 한다.

하나의 사례는 도이취크론의 회고이다. 2013년 연단에 오른 작가 겸 저널리스트 잉게 도이취크론은 “나치 친위대들이 ‘유대인들의 피가 흐르면 두 배나 좋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했다.”면서 “정부는 거의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제를 발표했다.”고 회고했다.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총리는 “인권은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자유는 스스로 발현하지 못하며, 민주주의는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다.”며 인간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의 중단 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 의장은 “80년 전 당시 독일의회는 독일의 민주주의 해체를 소리 없이 지켜본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이취크론은 “우리는 그 어떠한 비명도 듣지 못했다. 어떠한 저항도 보지 못했다. 단지 그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향해 순종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라며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전한 바 있다.<sup>24)</sup>

23)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유대인 대량학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1월 16일, 유엔은 200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유대인들이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날인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했다. 폴란드의 경우는 1943년 폴란드 유대인의 봉기일인 4월 19일(양력 기준)을 홀로코스트 기념일로 삼고 있다.

24) 『연합뉴스』 2013.1.31.

다른 하나의 사례는 클뤼거(2016년 당시 84세)의 연설이다. 193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클뤼거는 11세가 되던 1942년 체코의 테레지엔슈타트에서 강제수용소 생활을 시작했다. 나치 정권이 1938년 오스트리아를 강제병합한 탓이다. 클뤼거의 고난은 이후 3년간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거쳐 크리스티안슈타트 수용소까지 이어졌다. 그는 여성들이 당했던 성 노역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클뤼거는 “수용소에 있던 여성들은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었다.”면서 “(성관계는) 길게는 20분이 허용되는데, 막사 밖에선 남자들이 줄지어 기다렸다.”고 끔찍했던 장면을 회상했다. 클뤼거는 자신이 초청연설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그간 독일이 펼쳤던 난민 포용정책에 감명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0년 전 세기적 최악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독일이 오늘날 큰마음으로 난민에 문을 열어 박수를 받고 있다.”면서 “독일은 과거와 달라졌다.”고 그는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7년 미국으로 건너간 클뤼거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16년 1월, 본회의장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우크(Joachim Gauck) 대통령 등이 참석해 클뤼거의 연설을 경청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초청연사의 연설을 경청하는 독일의 전통은 1996년 시작됐다. 매년 과거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sup>25)</sup>

위의 두 사례는 인간의 저항과 순종, 주체성 및 정체성, 선택의 자유와 권리, 인권존중 등에 대한 철학적 고민의 대상이다. 또한 성관계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었고, 이는 여성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와 공포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쟁시기 ‘성 노역’ 자체는 성의 존재양식을 규정했고, 성 노역은 성폭력과 성노예였음이 확실하다.

25) 『국민일보』 2016.1.29.

### 3.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평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과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도 다양하고 논란도 많다. 그러나 요약하면, 강제성 여부 문제와 성매매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다음의 보도(사실 1)는 이 문제에 일정한 해답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주변적이거나 복잡한 자료는 생략한다.

(사실 1)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문서를 공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무색케 됐다. 이 문서는 일본군이 제2차 대전 중 인도네시아 내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일본정부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2016년 9월 하순부터 10월 6일까지 공개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는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530쪽 분량의 문서로 종전 후 일본군 장교와 민간인 등에 대해 강간죄 등으로 유죄 판결한 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이 문서는 바타비아(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전직 일본군 중장 등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한 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 재판기록과 피고인이 추후 일본 관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판결문에는 1944년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스마랑주)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 여성을 주내 4개 위안소로 연행한 뒤, 위협해서 매춘을 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전 일본군 육군 중장은 12년형을 받았다. 또 이 전직 중장은 1966년 일본 이시카와 현(縣) 현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때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료는 1993년 고노 담화(河野談話)의 기초가 된 것으로 그 존재와 주요 내용은 알려져 있었지만, 문서 자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 강제연행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고노 담화 작성 당시 법무성이 이들 자료를 요약했고, 이 문서가 내각관방이 수집한 자료에 포함돼, 담화 내용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의 공개로 ‘위안부 강제연행이 군과 관헌에 의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주장이 거짓임이 재삼 입증됐다. 아베 총리 제1차 집권기인 2007년 3월 당시 내각은 각료회의(각의, 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2년 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이 입장을 수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고노 담화 수정론까지 제기한 바 있다.<sup>26)</sup>

위의 사실을 보충하는 또 하나의 보도(사실 2)는 다음과 같다.

(사실 2) 일본정부가 각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문서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6월 30일 일본 참의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7일 각의에서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위안부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일본 공산당의 가미 도모코(紙智子) 의원의 서면 질의에 “2월 3일 182건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답했다. 이번에 국립공문서관이 제출한 182건 중 ‘바타비아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자를 위안부로 오쿠야마(奥山)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자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시민단체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

26)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hotissue\\_detail.htm?No=117198](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hotissue_detail.htm?No=117198) (검색일: 2017. 6.29).

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는 “이번 답변서는 일본정부가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내각관방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자료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기우다 코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들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문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sup>27)</sup>

이상에서 보면, ‘위협’ 당했고, ‘강요’ 당했음이 분명하다. 거기서의 성관계는 폭력적이거나 매매이다. 폭력과 매매는 (어떤) 연행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를 재구성하면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전쟁의 이름으로 연행되어, 성매매나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협과 강요라는 ‘한계상황(야스퍼스)’에 직면했음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가 있겠지만 이상의 내용으로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일본정부는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고 변명하는데 이는 궤변일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문서로 일본정부가 직접 위협해서, 매춘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강제로 연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인정한다는 것인가? 어느 국가가 이런 명령과 기록을 문서로 남기는가?

27) 『세계일보』 2017.6.30,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30002805> (검색일: 2017. 7.12).

#### 4. 일본군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 인식

일본정부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다음의 일본정부 장관 혹은 부장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해보자.

일본정부는 일본군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사용에도 꺼려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우선, 종군(從軍)의 이야기이지만, 종군 간호사, 종군 화가, 종군 의사 등등, 종군 이름이 붙으면, 군속이 되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안부가 종군, 군속이었다고 말하면, 확실히 종군이라고 하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당시 여러 곳에 가있던 분들이 모두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기에, 우리들이 봐도 종군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sup>28)</sup>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종군이거나 군속이 아니다, 종군이라고 하는 예는 없다, 일본 외무장관이 봐도 종군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일본의 속내였다.

또한, 미국의 에반스(Lane Allen Evans 1951~2014, 민주당,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이, 일본군 종군위안부 동원에 대한 비난결의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외무성의 입장이 무엇인지 추궁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중략) 이번 결의안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무성이 지시해서, 재미 대사관 관계자가 미국하원이나 정부관계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 현재의 입장에 입각해, 상대방의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sup>29)</sup>는 답변이었다. 에반스 하원의원이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이 결의안은 사실관계에 근거

28)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會議録2号(平成18年02月24日), 麻生太郎(自由民主党, 外務大臣).

29)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會議録20号(平成18年06月07日), 塩崎恭久(自由民主党, 外務副大臣).

하지 않은 잘못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였다.

한편, 일본군 종군위안부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담화는 14페이지에 달하는데, 이에 관해서, 시모무라(下村) 부장관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아베정권도,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 담화, 이것은 각의 결정된 내용으로, 이것은 정부가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정권도 이것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대로 내각으로서 답습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외무성의 당시 히라바야시 심의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더 연구 및 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기에, 나 자신은 개인적으로 폭넓게, 과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등이 더 필요하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해 나가고 싶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sup>30)</sup>는 답변이었다.

일본정부의 인식은, 겉으로는 고노 담화를 답습한다. 그러나 속내는 부정한다는 것이 된다. 국가로서는 고노 담화를 답습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폭넓게,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연구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 된다. 즉 속으로는 부정하고 싶은 것이 된다. 일본정부의 장관 혹은 부장관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여기에 모호함이 있다. 개인적 인식과 공식적인 장관의 인식이 구분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물론 사건을 전제한 비공식적 자리라면 다르다. 그러나 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의 발언은 정부견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본정부의 인식도 분명해졌다.

---

30) 第165回 衆議院 外務委員会 會議録3号(平成18年10月27日), 下村博文(自由民主党, 内閣官房副長官).



## 5. 일본군 종군위안부에 대한 합리화와 망언

일본군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 및 일본인과 일본 정치인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 그 사례를 보자.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는 직업적 매춘부”라는 발언(2016.1.16)을 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자민당 정조회장이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는 “과거엔 위안부제도가 합법”이었으며, “소녀상은 날조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904년 파리에서의 ‘매춘을 시키기 위한 무녀 매매 단속’에 관한 국제협정을 시작으로 인신매매 및 타인의 매춘 및 착취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타이완 등 식민지에는 해당 조약을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일본 사단법인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Fight for Justice)는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도였다면, 공창제도<sup>31)</sup>는 시민법 원리 하에 성노예제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한 성노예제”라고 지적한다. 사라 서(Sarah Soh, 샌프란시스코 대학 인류학과 교수)는 “매춘제도를 운영해도 된다는 차별적 성 인식이 위안부 제도라는 구조적 폭력을 양산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sup>32)</sup>

여기서의 쟁점은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매춘부인가 아닌가와 매춘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토대

31) 공창(公娼)제도는 성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의사로 성매매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하여 이후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으며, 일본에는 19세기 중반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1904년 일본 식 유곽(遊廓)이 등장했고, 1916년 공창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미 군정청이 공창 폐지령을 내려 1948년 공창제도가 폐지돼 불법화되었다. 공창제도가 불법화되자 도리어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번지, 천호동 일대 등 사창가가 성행하였다. 이에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돼 매춘은 불법이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접대문화가 성행하면서 매춘은 더욱 보편화 돼버렸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및 유럽의 몇몇 나라는 공창제도를 채택해 엄격히 매춘 통제를 해오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

32) 『헤럴드경제』 2016.2.2.

로 철학적으로 검토한다.

## 6. 성의 역사성과 폭력성에 대한 소결(小結)

성매매는 정당한가? 성은 노동인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sup>33)</sup>이다. 성은 시간과 육체와 감정의 복합요소로 구성된다.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묵인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로 구분되지만, 금지된 시기에도 성매매와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즉 법이나 규칙, 제도나 도덕의 규제 밖이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상황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인가? 매매의 주체가 선택의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어떤가? 성매매는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는 인간사회가 규제하기에는 인간사회가 너무 부실하고 자가당착적이다. 이 문제는 다시 사회 필요악(그것이 성매매이든 다른 것이든)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성폭력은 정당한가? 성은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때 생산적이고 주체적이며 쾌락적이다. 폭력은 강요이고 협박이고 억압이다.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이든 성폭력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성폭력을 교사(敎唆)하는 국가나 기관, 개인이나 환경(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 종교)은 처벌 및 폐쇄의 대상이다.

강제연행은 정당한가? 회유는 정당한가? 국가가 저지르는 전쟁범죄

---

33)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차이는 노동을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한다. 또한 그 형태는 사회관계의 발전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원시공동체에서 노동은 공동으로 발생하고, 집단적이기에 노동의 성과물 또한 공동으로 분배되었으며, 착취라는 것은 없었다. 생산수단의 공유가 그 특징인 것이다. 그 이후의 계급 대립적인 경제적 사회구성체에서는 항상 인간의 노동은 착취의 대상이었다. 노예·농노·근대 노동자의 노동이 전부 그렇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공유가 회복되어 노동자의 노동은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이 생활의 제1차적인 자발적 행위가 된다(『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가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전시상태에서 강제연행과 회유는 동전의 양면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총동원법 혹은 전시동원법에 의해 동원명령이 하달 되었을 때에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책임자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강제연행은 회유를 통해, 회유는 거짓을 통해, 거짓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묵인된다. 동시에 피점령국의 가난과 빈곤, 전근대성과 국가질서의 미확립 등은 이들의 범죄에 방조범이다. 여기서 전쟁의 부조리와 광기는 마치 영화에서처럼 나타난다.<sup>34)</sup> 하물며 식민지에서의 그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강제연행과 회유는 거짓과 협박으로 포장된 국가범죄이다.

성폭력 및 강제연행의 근원적 문제는 전쟁이다. 전쟁의 근원은 국가이다. 국가의 근원은 권력이고 권력의 근원은 심리이다. 전쟁에서 성은 폭력과 희생의 대상이다. 즉, 성 심리는 본능이면서 DNA구조에 기초하는데 여기에 국가권력(전쟁)이 개입하면서 본능과 DNA구조가 왜곡된다. 그러면서 국가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본능과 DNA구조를 이용한다. 여기서 이용자와 이용당하는 자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즉 성의 본능과 DNA구조는 무시되면서 상품이거나 배설작용의 기제(機制)로 전락한다. 전쟁터에서 이런 기제는 이용자와 이용당하는 자 사이에 ‘공포의 공존’을 만들어 낸다. 생존공포는 인간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런 공포의 제공자는 누구이고(국가), 제공요인은 무엇인가(회유·협박·강요·빈곤)? 법적 도덕적 윤리적 역사적 책임은 국가(일본제국)에 귀속된다. 국가는 그 법통에 따라 역사적 과오와 부채, 절차적 오류와 아포리아까지도 책임지지

34) 영화 “콰이 강의 다리”(감독 David Lean)는 ‘보이 대령의 행진’으로 알려진 휘파람 곡조로도 유명하지만, 전쟁의 부조리와 광기에 대한 묘사로 주목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영국군 장교와 일본군 장교 간에 의지의 대결을 중심으로 펼쳐진다(원작은 피에르 볼의 프랑스어판 동명 소설이다). 이 영화에 대해 이 논문이 주목한 부분은, 영국군 전쟁포로를 둘러싼 일본장교와 영국장교와의 설전이다. 여기서 포로에 관한 국제조약(제네바조약)은 휴지조각이 된다. 이것이 전쟁의 광기이고 인간의 부조리이다.

않으면 안 된다.

### Ⅲ. 성과 정치권력: 제국주의 및 국가의 문제

#### 1. 성의 문제와 제국주의의 속성

제국주의란 말은 라틴어인 황제국가(imperium)에서 유래되었다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870년대 이후라고 한다. 제국주의는 식민지주의나 팽창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공통적 특징은 단일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적 위함 행동·억압·침략 및 팽창 등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론도 보는 관점과 분석방법에 따라 제국주의의 철학이론·경제이론·사회이론·정치이론·군사이론·심리이론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체계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국주의 경제이론은 자유주의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으로 대별된다. 자유주의이론은 홉슨(J. A. Hobson)을 효시로 한다. 홉슨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단지 종주국과 식민지와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의 선진국에 의한 후진국의 착취나 선진국의 기생성의 발전과 같은 현상이며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상품과 자본의 잉여를 해외시장이나 해외 투자로써 해결하려는 데 제국주의의 근원이 있다고 본다. (중략) 이와 같이 홉슨은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므로 제국주의의 확장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잉여의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며 다만 양자택일적인 국내정책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카우츠키(J. H. R. Kautsky)와 힐퍼딩(R. Hilferding)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과 레닌(V. I. Lenin)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부터

혁명발전론을 전개하지도 않고 독점·금융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발전으로 파악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다만 조직화된 자본주의나 금융자본의 정책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개연적(蓋然的) 관계는 인정하나 필연적 관계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레닌 등의 이론은 이와 같은 조직된 자본주의론, 금융자본 정책으로서의 제국주의론, 변증법 부정의 점진주의론, 일반적 공평화의 부정론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레닌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로서, 그 특수성은 첫째, 독점자본주의이고 둘째, 기생적이며 부패하는 자본주의이고 셋째,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의 특징으로서 ①생산과 자본의 집중·집중이 고도의 단계에 도달하여 독점을 형성하고, ②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과 이를 기초로 한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의 형성, ③상품수출보다 자본수출이 특별한 의의를 가지며, ④국제적 독점자본가 단체가 형성되어 시장의 분할·가격정책·생산규모 등에 관해 경제면에서의 세계분할이 이루어지고, ⑤자본주의열강 사이에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영토획득을 위한 투쟁과 식민지쟁탈전이 격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슈페터(J. A. Schumpeter)는 이상의 경제이론과 달리 제국주의의 본질을 국가의 무목적·무제한적 팽창성향 및 충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역사상의 모든 제국주의를, 예컨대 고대 로마제국이나 근대유럽의 전제군주국들에 의한 대외침략도 본질적으로는 동일시하여 제국주의를 초역사적으로 파악하였다.<sup>35)</sup>

이상으로부터 쟁점을 요약하면, 제국주의는 식민지주의나 팽창주의를 통해, 제국(일본제국)의 철학이론·경제이론·사회이론·정치이론·군사이론·심리이론 등을 강요하여 제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식

35)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학사전』, 경연사, 201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559&cid=42085&categoryId=42085>.

민지(대한제국) 고유의 그것을 철폐하거나 말살하는 것이다. 일본제국은 한국의 자본 및 자원, 언어·교육·문화, 민족정신과 국가정기마저 착취하거나 말살하는 침략주의였다. 그 주체는 일본국이었다.

## 2. 국가의 성 범죄와 직무유기: 한국인 전범의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후 전범재판에서 한국인 전범은 148명(사형 23명, 징역형 125명)이었다. 수감자 중 29명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돼 일본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스가모(巢鴨) 형무소에서 계속 복역했다. 석방된 이후, 일부 한국인 전범자는 식민지 시기 일본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입국이 거부됐으며, 일본에서는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출소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포츠담선언에 따라 설립된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전쟁범죄를 A·B·C급으로 구분했다.<sup>36)</sup>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1955년 동진회<sup>37)</sup>를 결성하고 일본국회에 진정, 재판 청구,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서 처우 개선, 사죄,

36) A급 전범은 평화에 대한 범죄로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공동 모의, 개시, 추진을 주도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B급은 통상의 전쟁범죄로 포로학대 등 전시 국제법의 교전법규 위반 범죄, C급은 인도에 대한 범죄로 일반 국민에 대한 대량학살, 노예화 등의 비인도적 행위 및 범죄다. 실질적으로 B급과 C급 전범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괄하여 B·C급 전범이라고 부른다.

37) 한국인 B·C급 전범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투입했던 조선인(3,200명) 중 일본 패전 후 열린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포로학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8명을 말한다(23명 처형). 이들은 한국에서도 '일제 부역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했고, 전후 일본정부의 국적 이탈 조치에 따라 일본국적을 상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전범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일본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도 받지 못했다. 1955년 4월 동진회(同進會) 결성 당시 회원은 70명이었다(『연합뉴스』, 2015.4.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1/~.HTML?input=1195m>).

국가 보상을 요구했다. 일본인 B·C급 전범은 복역 후 일본정부로부터 공무를 수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은급법(恩給法) 및 원호법(援護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한국인 B·C급 전범이 일본군대의 일원으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그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한국인 전범에 대한 보상법안은 한국인 B·C급 전범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청산이 아니라, 일본제국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쟁 수행에 협력했음에도 일본인에 비해 보상 면에서 차별받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인 개인의 전쟁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본군 군인·군속이었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2001), 한센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2007), 피폭자 건강수첩 해외신청 인정(20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 등 최소한의 해결에 협조한 바 있다. 한국인 B·C급 전범에 대한 보상문제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sup>38)</sup>

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즉,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 및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일본제국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쟁수행에 협력한 것(전범)에 대한 보상인가?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담당하지 못했고 논리도 빈약했다. 후자가 아닌 전자의 문제임을 철저하게 따지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1965년 한일조약이 그것을 덮었다. 연합국 입장이면 그들은 전범이고 처벌대상이다. 일본제국 입장이면 은급대상이거나 보상의 대상이다.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제3국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법적 책임문제를 포괄적으로 묻어버린 한일조약의 폐해는 크다. 그

38) 김호섭, 「또 하나의 韓日 과거사, 한국인 戰犯」, 『문화일보』, 2016.10.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301073011000002>.

당사자는 한일양국이다. 남은 것은 인도적 책임이고 국제법적 상식이다. 한국이 식민지 지배 상태였기에 이제 와서 일본군대의 일원이라는 논리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엄연한 사실이기기는 하지만 제국주의가 만든 비인도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본논리대로 한일조약으로 종결되었다고 무책임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도 천박하다.

위의 사례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고민할 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식민지 지배 및 강제동원의 결과인가? 아니면 일본제국의 전쟁수행에 협력한 것인가?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식민지 지배 및 강제동원의 결과물이었기에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에서 분명한 것은 강제동원이든 전쟁협력이든 ‘일본제국의 범죄’라는 사실이다.

### 3. 한국정부의 무책임성과 이중성: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9)</sup>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992년 1월13일,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1995년 7월19일,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이하 일본기금)

1997년 1월11일, 일본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 엔 지급,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서한 전달

2002년 5월 1일, 일본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 한국 내 기

39) 『NEWSIS』, 2016.7.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4&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4&cID=10301&pID=10300).



#### 금활동 종료

- 2007년 7월30일, 미 하원 본회의,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 결의 채택
-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노력 않는 것은 위헌”
- 2011년 9월15일, 11월15일, 한국정부, 일본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 2011년 12월14일, 평화의 소녀상<sup>40)</sup> 건립
- 2012년 12월27일, 일본 관방장관 ‘고노 담화 수정’ 언급
- 2014년 4월16일, 한일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 1차 회의 개최
- 2015년 12월27일, 한일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 12차 회의 개최
- 2015년 12월28일,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일본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 명예와 존엄 깊은 상처, 일본정부는 책임 통감.”, “피해자 지원목적 재단에 정부 예산 출연, 불가역적으로 해결.”
- 2016년 3월22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1차 국장급 협의 개최 (도쿄)
- 2016년 4월20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2차 국장급 협의 개최 (서울)
- 2016년 5월10일, 외교부 “위안부 재단, 상반기 중 설립 목표”
- 2016년 5월17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3차 국장급 협의 개최 (도쿄)
- 2016년 5월31일, 위안부재단 준비위원회 발족
- 2016년 7월28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인식과 해설보도가 있었다.

40) 1992년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시작되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염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평화의 소녀상’을 계획하였다. 집회 1000회째인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다(『한국 위키백과』).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양자문제로 봉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전시 위안부는 한국 외에도 일본,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한 전시 여성인권유린 문제다. 하지만 한일 양국 차원에서 해결하려다보니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을 띤 외교적 용어들만 가득한 합의를 도출했다. 건설적 모호성은 한 사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이해가 극심하게 다를 때, 용어나 표현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책임을 한국은 ‘법적 책임’으로, 일본은 ‘도의적 책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 건설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일본은 “전시 미국, 독일 등에 의한 위안부가 운영됐으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미군에 의한 신탁통치 기간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일본인 위안부를 모집했다. 일본정부에도 특수위안시설협회<sup>41)</sup>라는 기관이 있었고, 일본인 위안부를 동원했다. 이들 중에는 매춘부도 있었지만 일반인도 있었다.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람도 존재했다. 일본 보수파는 이를 이유로 “일본도 ‘피해자’의 경험이 있지만 전시 어디에서든 있었던 문제였으며, ‘필요악’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일 외교차원에서는 합의문 이행, 민간 및 국제사회 차원에

41)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會,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는 제 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군 점령지 일본에 일본정부가 만든 위안소이다. 이는 연합군병사를 상대로 한 매춘부(위안부)가 있었던 도쿄에 설치되었다. 영어로는 ‘여가·오락 협회’로 일본어 명칭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 RAA의 기본적인 발상은 전시 중의 위안소 시설이지만, 전쟁 중 위안부와 다른 점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광고에 응한 일반 여성들을 고용한 것이다. 처음에는 유흥업자 근무자(水商売の者)들을 고용할 예정이었는데, 생각처럼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전시 중에 매춘으로 검거한 자에게 위안부가 되도록 경찰이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전시 중의 여자청년단을 종전 후, 반 강제로 모집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집 광고에는 “신일본 여성 모집: 숙소, 의복, 식량 모두 지급”이라고 써서 광고판을 긴자(銀座) 등에 설치했고, 또 신문광고로도 일반 여성을 모집했다. 하루에 약 300명이 응모했다. 히로오카 케이이치(広岡敬一)에 따르면 상세내용이 광고에 기재되지 않아,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의 상당수는 대부분 일의 내용을 알고는 돌아갔다고 한다(『일본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wiki/%E9%9D%92%E7%B7%9A>).

서는 '전시 여성인권 실태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sup>42)</sup> 전시 중 성노예 문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위해 가해 국가들의 분명한 책임규명과 보상이 필요하다.<sup>43)</sup>

위안부 합의의 경위는 1991년 실태고발, 1995년 일본기금 설립, 2011년 평화의 소녀상 건립, 2014년 한일 국장급 실무협약,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재단설립을 통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합의는 오히려 해결이 아닌 문제제기였다. 한일 두 정부(박근혜와 아베)가 봉합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왜 일까?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데에 있다.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상처이고, 영혼의 무너짐이며, 인간존엄의 말살이고, 여성성의 잔혹사이고, 육체의 찢어짐이다. 이를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한일 두 정부의 철학부재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성에 대한 역사성과 폭력성을 무시한 혹은 그에 대한 무지의 결과물이다.

역설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역사적 상처를 위로하며, 영혼을 보듬었다. 소녀상은 인간존엄의 현장고발이며, 문화적 저항이며, 여성성의 잔혹사를 조용하게 웅변하는 울림이다. 일본정부에게 소녀상은 눈엣가시이다. 영화가 기록으로 남아 나치즘을 고발하듯<sup>44)</sup> 소녀상은 문화적 저항의

42) 연구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한일정부 간 합의문은 외교적 합의이기에 이행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통성이 전제된 정부차원의 일이다. 외교적 합의일지라도 위안부 당사자 혹은 국민정서의 차원에서 정통성 결여가 문제가 되어, 수용할 수 없는 합의문이라면 거부(저항권)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리가 아닌가? 또한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는 실체는 무엇인가?

43) 『헤럴드경제』 2016.2.2.

44) 영화, 신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마스 케닐리(Thomas Michael Keneally)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나치들의 잔인한 광기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출연자 모두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무명배우들로, 장소도 실화의 현장인 크라쿠프에서 실제 그때의 공장을 사용해 촬영한 흑백영화이다. 1993년 제66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 4. 국가와 제국주의, 성에 대한 철학적 문제

국가는 전쟁권한이 있는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이 라면 가능한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인가?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거나 희생물인가? 정치의 전쟁을 조장하는가? 국가의 거짓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전쟁에서 살인은 정당화되는가? 전쟁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조약이나 규약으로 금지된 것도 전쟁에서는 허용되는가? 현실과 이상의 문제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거나 ‘아니다’이다. 아포리아다. 정답은 없다. 그러기에 철학적 물음의 대상이다.

여러 다종다양의 논리는 배제하고 단순화시켜 논의한다. 전쟁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다. 국가를 움직이는 자는 ‘소수’의 정치인이다. 전쟁 방지는 국가의 작동을 소수에게 맡겨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왕정이나 귀족정이 아닌 민주정체나 공화정체가 역사적으로 정착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전쟁발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소수’의 전쟁 광이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국가이다. 민주정체나 공화정체가 역사적으로 정착되었다지만 예외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반성하게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sup>45)</sup> 이런 질문마저 불가능했던 제국주의시대는 그런 점에서 암흑시대

---

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을 수상하였다(『두산백과』).

45) 2008년의 독일 영화, 디 벨레(Die Welle, Dennis Gansel 감독)는 스트라서(Todd Strasser)의 소설 『파도(The Wave)』를 원작으로 하며, 역사교사 론 존스의 실제 교실실험을 다루고 있다. 정상적 사회가 파시즘이라는 파도에 몰드는 과정을 경고한다(『한국 위키백과』). 이 영화에 대해 이 논문이 주목한 부분은, 배타적 공동체와 독재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인간은 거기에 어떻게 순치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끊임없이 현대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

였다. 지도자의 철학부재는 국가 간의 전쟁인 암흑과 인간성 파괴를 예고 하며, 국민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몰아간다.

##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철학적 자양분을 얻었을까? 결론에서는 그 의미규정을 시도해 본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그 ‘문제’는 전쟁의 산물이다.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다. 성은 인권문제이다. 시대가치는 다를지언정 문명사회일수록 인권가치는 성스럽다. 인권은 자연법적 보편 가치이다.<sup>46)</sup> 전쟁으로 성이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유린된 성과 인 권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조약이나 보상으로 끝낼 수 없다. 보편가치는 전승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개인청구권 무효 혹은 한일정부 간 협약이 있었기에,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는 논리는 철학적 혹은 자연법적 관점에서 허구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한계상황(Jaspers, Karl)

46) 자연법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까지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에 대응해서 시대에 따라 다르나, 입법자의 자의(恣意)를 넘은 정(正)·부정(不正)의 객관적 기준의 사상임에는 변함이 없다. 더욱이 자연법은 단순히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도덕기준일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재판의 기준 내지는 테두리로서 스스로 ‘법’이라는 주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규범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으며, 상위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한다든지 또는 무효로 한다. 여기에서 자연법의 실정법 정당화 기능과 광정적(匡正的)·보충적 기능, 보수적 기능과 혁신적 기능이 발생한다. 또 대전(大戰) 후와 같이 실정법 질서의 혼란·동요기에는 상위규범인 자연법에의 호소가 성행한다. 자연법은 불변의 인간본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 법원리로서 보편타당성과 보편윤리성을 그 특색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살인하여서는 안 된다”나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자연법의 규칙은 반드시 어떠한 시대·사회·민족에서나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지(人智)나 문명의 미발달로 자연법에 대한 인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한국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7%B0%EB%B2%95>).

에서 종군위안부는 거부(Marcuse, Herbert)와 저항(Locke, John)이 불가능했기에 국가권력은 쉽게 성을 왜곡했고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인간욕망은 '절제'되어야 함에도, 전쟁은 이들을 통제 불가능과 절제 무용(無用) 상태로 만들어,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다.

전쟁에 의한 일본제국의 책임(사죄와 보상)은 일본제국의 법통을 이은 일본정부의 몫이다. 국권상실의 책임(대한제국의 정치권력)과 국권회복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려면, 한국정부의 도의적 가치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 범죄에 대한 정부의 책임(사죄와 보상)을 면하기 어렵다.<sup>47)</sup> 진정한 사죄와 화해는 국가가 나서서 전쟁종언을 선언하고 나아가 반전(反戰) 평화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글의 결론에 이르러 탈출구를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문화적 저항'이다. 소녀상은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문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두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화신(化身)으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시공간을 넘어서 '문제'로 남는다. 역사적 실체로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아이콘이 된다.

일본제국, 제국주의자, 수구세력, 대한제국, 그 권력의 앞잡이, 가해자와 협력자, 무례한과 무능한 등등은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상징 앞에 겸손해야한다. 이상의 철학적 검토는, 뻔뻔하고 가증스런 일본제국, 탐욕과 오만의 제국주의자, 자기논리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구세력, 역사정의를 세우지 못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한국, 일신영달을 추구한 국가권력의 앞잡이 등에 증오와 분노를 느끼게 한다.

47) 이에 대한 논의는,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1999년 『한겨레21』 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5, 7-41쪽; 伊藤正子 『戦争記憶の政治学: 韓国軍によるベトナム人戦時虐殺問題と和解への道』, 平凡社, 2013, 1-292쪽.

남은 과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생명력을 이어갈 의식있는 국민 절대다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를 착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수’의 전쟁광이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국가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민주정체나 공화정체가 국가적으로 정착되어, 예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모든 정치현상은 민주주의의 이름아래 공개되고, 논의되고, 질문 받아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물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논박과 논쟁도 가능한 민주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예방되어야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2016년 한국의 촛불정신은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게 인간이냐?”라고.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전진의 역사로 계승되어야 한다.

인류사에는 획기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많은 인물이 있다. 코페르니쿠스와 다윈,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카프카와 니체, 이순신과 안중근, 아인슈타인과 스티브잡스 등등이다. 그들은 물리역학의 인식체계를 뒤집어 과학기술로 생활양식을 바꾸었고, 더불어 역사철학의 사고체계를 바꾸었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국가와 제국주의, 국제법과 국내법 등에 가두어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아이콘이며, 인권보호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는 사죄와 화해로 마감하는 종결형이거나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고 물음표여야 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12월 4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김호섭, 「또 하나의 韓日 과거사, 한국인 戰犯」, 『문화일보』, 2016.10.13.
- 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도종윤, 「국제정치학 연구에서 현상학적 글쓰기」,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 2015.
- 朴洪英, 「日本軍従軍慰安婦に関する日本国会会議録(1990-2016)の検討: 日本政府の本音と建前の読み取り」, 『일본연구』 7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 송연옥 외 지음,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지음, 이성순·한예린 옮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나남출판사, 2010.
- 와다 하루키 지음, 정재정 옮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역사공간, 2016.
- 우에노 지즈코 지음, 이선이 옮김,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학: 다시 쓰는 내셔널리즘과 젠더』, 현실문화, 2014.
-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1999년 『한겨레21』 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2015.
- 이석태 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법적 쟁점의 정리와 최근 동향의 분석』, 민족문제연구소, 2009.
- 이재승,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Aporia Review of Books』 Vol.1, No.2, 2013, [http://www.aporia.co.kr/bbs/board.php?bo\\_table=rpb\\_community&xwr\\_id=39](http://www.aporia.co.kr/bbs/board.php?bo_table=rpb_community&xwr_id=39) (검색일: 2017.8.1).
- 정영환 지음, 임경화 옮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푸른역사, 2016.
- 정진성, 『일본군 성 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조시현,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 사회』 46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풀빛, 2001a.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2001b.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會 會議録 2号(平成18年2月24日).

第164回 衆議院 外務委員會 會議録 20号(平成18年6月7日).

第165回 衆議院 外務委員會 會議録 3号(平成18年10月27日).

第166回 衆議院 外務委員會 會議録 10号(平成19年5月9日).

伊藤正子, 『戦争記憶の政治学: 韓国軍によるベトナム人戦時虐殺問題と和解への道』, 平凡社, 2013.

中川敏宏, 「慰安婦合意と憲法訴訟—最終的解決が残したリーガル・イシュー—」, 『国際問題』, No.655,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6.

David Lean 감독, 〈콰이 강의 다리(The Bridge On The River Kwai)〉, 1957.

Dennis Gansel 감독, 〈디 벨레(Die Welle)〉, 2008.

Steven Allan Spielberg 감독,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

공익법센터 어필, <http://apil.or.kr/?p=7691> (검색일: 2017.7.12).

「또 하나의 韓日 과거사 ‘한국인 戰犯」,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01301073011000002> (검색일: 2017.6.29).

「로마규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323&cid=40942&categoryId=31719> (검색일: 2017.7.12).

「성노예」,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85%B8%EC%98%88> (검색일: 2016.1.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188> (검색일: 2017.6.29).

「UN,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권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c=3480017&ref=D> (검색일: 2017.6.29).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공개」,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hotissue\\_detail.htm?No=117198](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hotissue_detail.htm?No=117198) (검색일: 2017.6.29).

「일본군위안부 증언부터 피해자 지원 재단 출범까지」, 『NEWSIS』, 2016. 7.2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494&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7_0014249494&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7.7.12).

「日 '위안부 강제동원' 문서 존재 첫 인정」,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30002805> (검색일: 2017.7.12).

「자연법」,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7%B0%EB%B2%95> (검색일: 2017.7.12).

「青線」, <https://ja.wikipedia.org/wiki/%E9%9D%92%E7%B7%9A> (검색일: 2017.7.12).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NEWSIS』, 『철학사전』, 『경제학사전』, 『시사상식사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다음백과』, 『두산백과』, 『네이버백과』, 『한국 위키백과』, 『일본 위키백과』.

Abstract

## A Philosophical Review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xuality and Political Power

Hong-Young Park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Wianbu) problem is a matter of sexuality and political power during the World War II. The war cause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main part of the war is the nation-state. Even though the value of time is different, the value of human rights is sacred. Human rights are natural legal universal values. War damaged sexuality and human rights were destroyed. Human rights have no statute of limitations, these cannot end up with a treaty or reward.

Nation-state power must be regulated, and human desires should be restrained. But during the war, nation-state power was not controlled, and moderation was meaningless. The crime(sexual violence) is worse, to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responsibility(apology and compensa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a higher morality if the Korean government wants to make a bold request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order to do thi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look at the responsible for the Korean military crimes of the Vietnam War, such as apology and compensation.

At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 sought an exit. It is the statue of peace as a symbol, *Cultural Resistance*. The statue of peace resist against the duality

of the nation-state and the human rights issue. The remaining challenge is to make a history of the majority that have been conscious of the vit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resistance. The question of how to be a practical democracy is to be constantly asked. Any argument should be allowed in the nation-state, and dark ages should be prevented, for example the *Candle Demonstration* (“Is this a nation-state?; Ege Nara Nya?”) in 2016. S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roblem’ should be an ongoing, not a period, but a question mark.

#### Key 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exuality, Political power, War, Nation-state